

등교 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세부 운영 계획

덕과초등학교

1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

- 학생·교직원의 건강 증진: [교육기본법]제27조제1항
- 교육과정 관련
 - [초·중등교육법] 제23조제2항(교육과정 등), 제24조제2항(수업 등)
 - [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] 제48조제4항(수업 운영방법 등)
 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시 제2019-211호)
 - 신학기 휴업에 따른 전국 초·중·고,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안 안내(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-2427, 2020.3.20.)
 -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기준(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-2427, 2020.3.26.)
- 출결,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관련
 - [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] (교육부 훈령 제331호)
 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가이드라인(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2010, 2020.4.7.)
 -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세부 운영 기준(전라북도 교육청 학교교육과-6612, 2020.5.11.)
- 등교수업 실시 및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관리
 - [학교보건법] 제14조의3제1항, 제3항
 - [학교보건법시행령]제22조의2제1항, 제22조의3
 - [감염병예방대책] 및 [학생 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] (발간등록번호 11-1342000-000180-01)
 -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2판)(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3620, 2020.5.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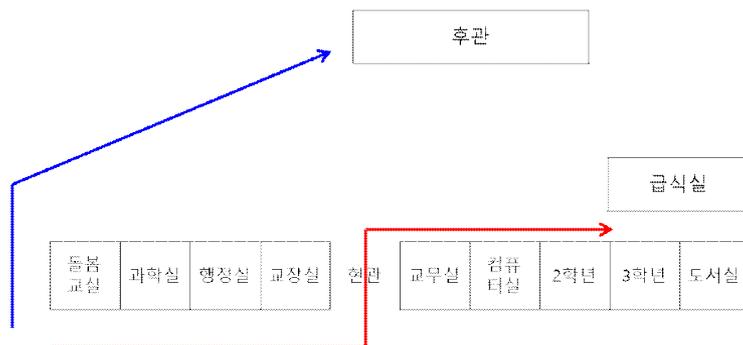
2 기본 방향

- 가.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힘쓴다.
- 나.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등교수업을 실시하고,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시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·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학교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학교 시설의 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 [2020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](덕과초등학교-2213, 2020.4.8.)을 기준으로 수업을 실시한다.
- 라. 시정표 조정 및 급식 시 학생 자리 배치 조정 등을 통해 학교내 공동 이용 장소의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접촉을 최소화하여 수업을 실시한다.
- 마.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등의 출결 관리 원칙, 감염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생평가, 학생부 기재 원칙을 마련한다.
- 바. 지역·학교 여건의 종합적 고려,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.
- 사.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, 전라북도교육청, 남원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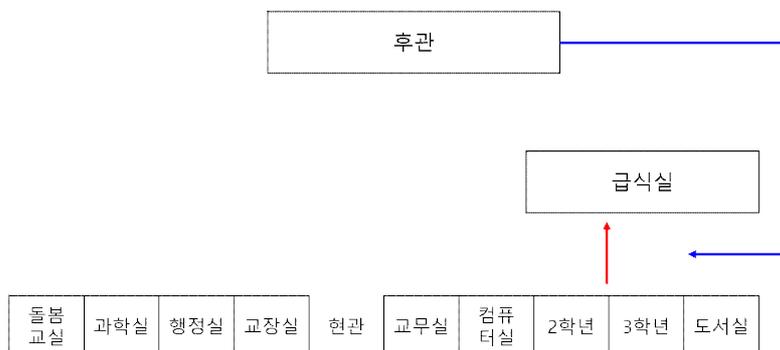
3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

가. 기본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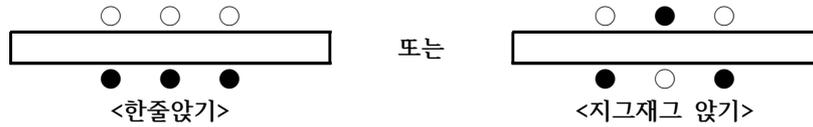
- 출입구, 특별실, 급식실, 복도, 화장실 등 공동이용 장소의 밀집도 최소화
 - 등하교 출입구, 급식실 이동 경로 분리 운영
 - 등교 시: **(1-3학년)** **(4-6학년)**



- 급식실 이동 시: **(1-3학년)** **(4-6학년)**



- 학년별 등하교·수업·급식 시간 분리 운영
- 교실 학생 책상 간격 조정 및 급식 실 자리 배치 조정



- 가급적 해당 학급 교실에서만 활동하여 확산 가능성 최소화

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

- 원격수업 → 등교수업 →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체제 전환 → 등교수업 재개 등의 전 기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

개인 위생 교육 및 관리 지도

- 학교 방역 및 소독 실시 완료, 이후 매월 방역 실시 예정
- 학급별 매일 소독 및 학급 물품 관리
- 아침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 건강 상태 확인 및 조치, 자가진단 지속 운영
- 스쿨버스 탑승 전, 교실 입실 전 발열 체크
- 스쿨버스 내, 교실에 체온계 및 예비 마스크 구비(면마스크 2개, 일회용 마스크)
- 1일 1회 이상 발열 체크 - 학급별 일지 작성 관리[붙임1]
- 수업 중 마스크 착용 필수, 학생 상태(호흡곤란, 이상 증세)에 따라 마스크 착용 관리 담임 관찰 및 조치
- 수업 전 후 책상 및 개인 물품 소독, 개인용 컵 지참
- 손씻기, 기침 예절, 마스크 착용방법 등 상시 교육 실시
- 체육활동 및 격한 신체활동 지양

※ 확진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급문화 만들기(집단 따돌림 방지 등)에 노력

나. 수업일수

- (1~3학년) 171일, (4~6학년) 173일
- 학교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일정 조정하여 운영
 -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 학부모에게 안내 (학교홈페이지 탑재)

다. 수업 시간표 운영: 학급교육과정에 따라 운영

라. 수업시간 운영

- 등교수업으로 운영,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또는 등교중지학생 등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에 한해서만 원격수업 운영
- 학년별 시정표를 조정하여 운영

<임시 시정표>

1-3학년		4-6학년	
등교	~9:00	등교	~9:10
1교시	9:00~9:40	1교시	9:10~9:50
2교시	9:50~10:30	2교시	10:00~10:40
3교시	10:40~11:20	3교시	10:50~11:30
4교시	11:30~12:10	점심시간	11:30~12:30
점심시간	12:10~13:10	4교시	12:30~13:10
5교시	13:10~13:50	5교시	13:20~14:00
6교시	14:00~14:40	6교시	14:10~14:50

4 교수·학습 운영

가. 기본원칙

- 밀접 접촉 최소화
 -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 자제하고,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
 -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, 학급 내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 배치
 - 개인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모둠활동 지양,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없도록 노력
-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 발생 시 원격수업 전환 계획 수립
 - [2020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계획](덕과초등학교-2213, 2020.4.8.)을 기준으로 운영
 - e학습터와 학습꾸러미, 과제 등을 병행하여 운영 (1~6학년)
 - 상황 발생 시 원격수업 즉시 전환에 대한 학생 안내 및 사전 교육 실시

나. 교과 활동

- 교과별 수업: 개인활동 중심으로 수업하되, 토의·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·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, 비밀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
 - ※ 체육교과 수업: 등교수업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(인성건강과) 참고
- 학생 이동 최소화: 학습자중심 활동공간 등 학교 내 이동수업,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·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
- 공동 이용시설 사용 최소화: 도서실, 과학실 등 특별실 이용을 최소화 하고 학급 내 활동으로 대체 권장. 불가피하게 이용 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 후 사용
- 학습 결손 최소화: 원격수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더딤학생의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

※ 기초학력 진단-보정 시스템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한 학습자료 제공 등

- 초등 1학년 적응 지원: 등교 후 입학초기 정서적·심리적 안정 적응을 위해 담임과 학생과의 심층 상담 및 학부모와 정기 상담 강화

다. 창의적 체험활동

- 자율활동: 다네 활동 및 행사를 가급적 지양, 불가피한 경우 참여 인원 최소화
 - 대면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참석인원, 행사공간,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- ※ 수학여행,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가급적연기 검토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참고)
- 동아리활동: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가능
 -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
 -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,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 확보
 -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동시간 대에 클럽별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, 한 장소에서 다수 클럽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방식 지양
 - 예술강사 활용 수업은 [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예술교육활동 가이드라인](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-8688, 2020.5.18.)를 기준으로 운영
- 봉사활동: 외부 기간 방문 봉사활동 가급적 자제,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가급적 지양
- 진로활동: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학습은 체험방법 및 유형(강연형, 현장견학형, 진로캠프형), 참석인원, 체험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
 - 숙박형 프로그램은 가급적 연기 혹은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
 -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, 진로교육 플랫폼 활용

라. 기타

- 교외체험학습
 -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**(사전 신청서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)**
 - ※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
 - ※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, 재량휴업일, 방학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
 -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
- 교내 대회: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가능
 -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 자제, 일정거리 확보 등 준수
 -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,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,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

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

※ 비대면 대회 시, 학생의 활동 결과물 등에 대한 자료 보관 필요

□ 학생 상담

- 전문상담(교)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, 위(Wee)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원
- 격리학생 심리지원: 불안, 우울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(Wee)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
- 격리상담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·공감 교육 실시

5 **출결 관리**

가. 기본원칙

-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 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- 코로나19로 인해 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(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 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
나. 등교중지학생: 특정 학생이 [학교보건법] 제8조, [학교보건법시행령]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**“출석인정결석”** 처리

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**“출석인정 조퇴”** 처리

【 등교중지 대상 학생 】

대상	등교중지 기간	등교 재개 요건	출결증빙 자료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▪ 보건당국에서 판단	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의사학생	14일	▪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	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 결과지(보건소 발부)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▪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	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자가격리학생	14일	▪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	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	가족(동거안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▪ 가족(동거안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	가족(동거안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유증상학생	증상발현* 후 3~4일 *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	▪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	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

【 대상자별 정의 】

- **확진학생:**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
- **의사학생:**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조사대상 유증상학생**
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
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학생
- **자가격리학생**
 - ① 해외 여행력*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
 - * '20.4.1.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
 - ② 가족(동거인)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
- **유증상학생:** 37.5℃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, 구토,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, 메스꺼움, 미각·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

다. 고위험군학생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**기저질환**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) 및 **장애**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받은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에 한함)를 가진 학생의 경우, **"출석인정 결석(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)"** 또는 **"질병결석(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, 주의 단계이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)"** 처리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하며,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

※ 고위험군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 실시 및 등교 후 보충학습 실시

라. 기타 미등교학생: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"기타결석(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)" 처리

□ "심각, 경계"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"출석인정 결석" 처리 가능(p6참고)

※ 유의사항: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6

학생 평가

가. 기본원칙
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-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
-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자체(완성도 등)를 평가하지 않음
 - 원격수업 당시 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, 성취도, 태도, 참여도,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
-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실시

나. 수행평가: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, 비밀 방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, 상시 마스크 착용, 방역 강화 등 조치

7

학교생활기록부 기재

가. 기본 원칙: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

-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. 단,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,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

나. 창의적 체험활동

-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(교사 관찰여부와 무관)
- 교사의 관찰·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

다. 인적·학적·출결: 2020.3.1.부터의 사항을 기재

- ※ 원격수업 기간 중 출결 기록(특기사항 포함)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	<h1>가정통신문</h1>	더불어 배우고 함께 꿈꾸는 덕과 어린이
	<h2>- 등교수업 실시 안내 -</h2>	

안녕하십니까?

학부모님의 가정에 활기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며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

5월 20일(수)부터 온라인 수업이 종료되고,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. 학부모님께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의 등교 준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 항상 학교교육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❖ 5월 20일(수) 등교수업 실시대상: 전체학년 (유치원, 1-6학년)	
❖ 가정에서의 협조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- 아침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 파악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. (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) - 학생 마스크 착용 후 등교 -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 협조 - 교과서, 학생 개인용 컵, 양치도구 등 준비 - 감염우려로 인해 등교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. 등교 후 학부모 확인서 제출 - 출결·평가, 학교교육과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※문의사항: 담임교사 또는 063-626-2106
❖ 학생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쿨버스 탑승 전, 교실 입실 전 발열 체크 - 등교 후 1일 1회 이상 발열 체크 예정 - 수업 중 마스크 착용 -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담임교사와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기 - 온라인 수업 중 했던 과제 담임교사에게 제출

※ 참고자료: 임시 시정표,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자료

2020. 05. 19.

덕 과 초 등 학 교 장

<참고1> 임시시정표

1-3학년		4-6학년	
1교시	9:00~9:40	1교시	9:10~9:50
2교시	9:50~10:30	2교시	10:00~10:40
3교시	10:40~11:20	3교시	10:50~11:30
4교시	11:30~12:10	점심시간	11:30~12:30
점심시간	12:10~13:10	4교시	12:30~13:10
5교시	13:10~13:50	5교시	13:20~14:00
6교시	14:00~14:40	6교시	14:10~14:50

<참고2>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자료

대상	등교중지 기간	등교 재개 요건	출결증빙 자료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당국에서 판단 	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의사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	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 결과지(보건소 발부)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	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
자가격리학생	14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	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	가족(동거인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	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유증상학생	증상발현* 후 3~4일 *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	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

※ 등교중지학생은 대체학습(원격수업) 실시 및 등교 후 보충학습 실시.

※ 출결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.